
국외출장보고서

2018. 11.

「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전달체계 심층분석」 국외출장 보고

□ 출장목적

-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적 아동복지전달체계의 사례연구
 - 스웨덴, 독일 등 지방분권화된 국가의 아동복지전달체계와 중앙과 지방의 정부 간 관계
 - 아동복지자원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사례 연구
- 해당 국가의 학계 및 공무원 면담을 통하여 한국의 통합적인 아동복지 전달체계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

□ 일 시 : 2018년 10월 21일 ~ 2018년 10월 29일 (7박9일)

□ 출장국가 및 도시 : 독일/보훔, 스웨덴/스톡홀름, 칼마르

□ 출장자 : 류정희 연구위원

□ 일별 방문자 및 면담 주요내용

일시	행선지	방문기관/면담자	주요내용
2018.10.21	인천-독일/ 뒤셀도르프	이동	
2018.10.22	독일/보훔	Evangelische Hochschule Rheinland-Westfalen Lippe, Prof. Dr. Dirk Nusken, Dr.Karen Bossow	-최근의 독일 연방 가족·노인·여성·청소년부(BFSFJ: Bundeminsterium fur Familie, Senioren, Frauen und Jugend)의 최근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개혁안 -아동보호체계의 국제비교(최근 프로젝트)의 주요 논점

2018.10.23	독일/하겐	Stadt Hagen(하겐시청)/ Reinhard Goldbach 청소년사회국장	가족을 기초로 한 공적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작동방식 지역사회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아동보호기관과 아동청소년지원시스템의 연계
2018.10.24	스웨덴/스톡홀름	이동	
2018.10.24	스웨덴/스톡홀름	Stockholms universitet/Prof. Marie Sallnas, Prof. Tommy Lundström	스웨덴 아동복지의 현황과 전망 취약아동의 보호권에 대한 참여 최근의 아동보호권리협약(CRC)에 기초한 스웨덴아도정책의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
2018.10.24	스웨덴/스톡홀름	Uppsala University/홍희정 박사	스웨덴의 사회서비스전달체계와 한국의 사회서비스전달체계의 비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과 관계
2018.10.25	스웨덴/스톡홀름	Social affairs administration in Stockholm Stad/Magnus Waller, Annelie Sjöberg,Erik Nordstrand	아동, 가족을 위한 스톡홀름시의 아동복지 서비스전달체계 현황 아동복지서비스전달체계에서 중앙정부와의 관계
2018.10.25	스웨덴/스톡홀름	SKL Fastigheter and Service/Pani Hormatipour, Fredrik Hjulström	아동복지정책에서 지방정부연합의 역할 지방정부연합에서 통합적인 아동가족복지서비스와 정책관련 이슈와 전망
2018.10.25	스웨덴/스톡홀름	Lidingo Stad/Young Hee Youn	Lidingo시에서 취약위기 아동, 청소년에 대한 지원서비스
2018.10.26	스웨덴/스톡홀름	Stockholms universitet/변영환 박사	사회적양극화와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지원 -스웨덴, 미국, 한국의 비교
2018.10.26	스웨덴/칼마르	Scandinavi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/최연혁교수	스웨덴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최근변화 스웨덴 아동가족정책의 현황과 이슈 한국과의 비교 및 시사점
2018.10.27	스웨덴/스톡홀름	스칸디나비아연구소/김진석교수(서울여대)	-사회서비스전달체계의 영국, 독일, 스웨덴, 한국 비교분석 -출장아젠더의 총괄 및 논의

1. 독일

□ 일시: 2018.10.22.(월) 11:00-13:00

□ 장소: Bochum Mercure Hotel

□ 참석자: [원내] 류정희 연구위원

[원외] 김진석 교수(서울여대 교수, 現 안식년 체류중,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), 김이진 전문위원(사보위)

○ 독일 및 스웨덴 면담일정 검토

○ 면담 질문목록 확정

○ 한국 아동보호체계의 현안 중 공공사례관리의 통합. 아보전의 공공화방안, 아동영역 중앙지원조직 설치의 필요여부 관련 쟁점에 대한 논의

□ 일시: 2018.10.22.(월) 16:00-18:00

□ 장소: Evangelische Hochsc20181021hule
Rheinland-Westfalen-Lippe

□ 참석자: [원내] 류정희 연구위원

□ [원외] Prof. Dirk Nüsken(EvH RWL), Karen Bossow(EvH RWL), 김진석 교수(서울여대), 김이진 전문위원(사회보장위원회)

□ 회의내용

○ 아동·청소년 서비스에 있어서의 연방정부(Federation), 주정부(Länder), 기초지방자치단체(Local authorities)의 역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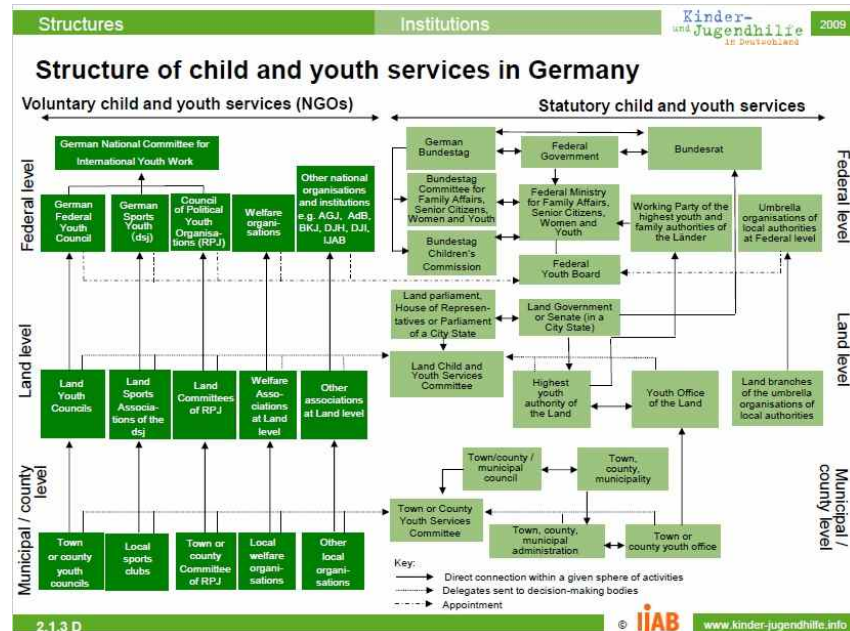
- 연방정부(Federation): 가족·노인·여성·청소년부에서는 사회법전 8

권(아동·청소년복지)을 기반으로 운영, 연방 청소년위원회 (Bundesjugendkuratorium)를 구성, 4년마다 연방 정부의 아동·청소년보고서 작성

- 주정부(Länder): 16개의 청소년사무소, 아동·청소년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에 재정적 지원 제공, 지역 청소년 봉사 단체에 교육 등을 지원
- 기초지방자치단체: 청소년사무소(Youth Office)를 설치하여 지자체 단위에서의 계획 및 재정 지원을 포함하여 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를 담당함

○ 공공-민간(NGOs)과의 협조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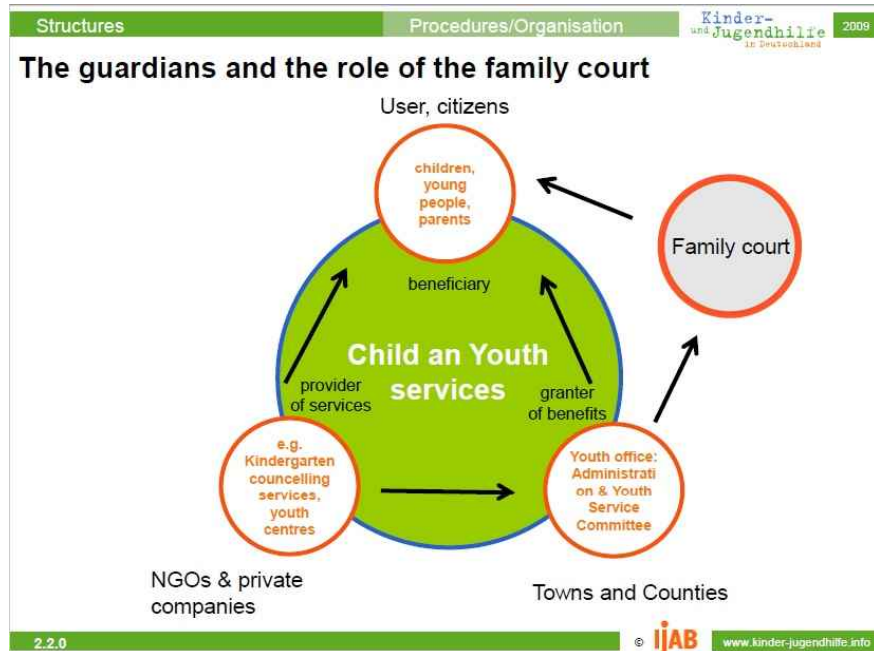
- 공공과 민간의 청소년 서비스는 파트너로써 협업하는 체계를 기초로 함.
- 아동·청소년 서비스 제공의 주된 책임은 공공에 있음.
- 보충성의 원칙(Subsidiaritätsprinzip): 사회적서비스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 의해서도 전달되며, 민간이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경우 주정부가 제공하지 않음.
- 공공은 민간 부문의 서비스가 잘 제공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비물질적인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.



〈독일의 공공-민간의 아동·청소년 서비스 구조〉

○ 아동보호체계 내 세 주체의 삼각관계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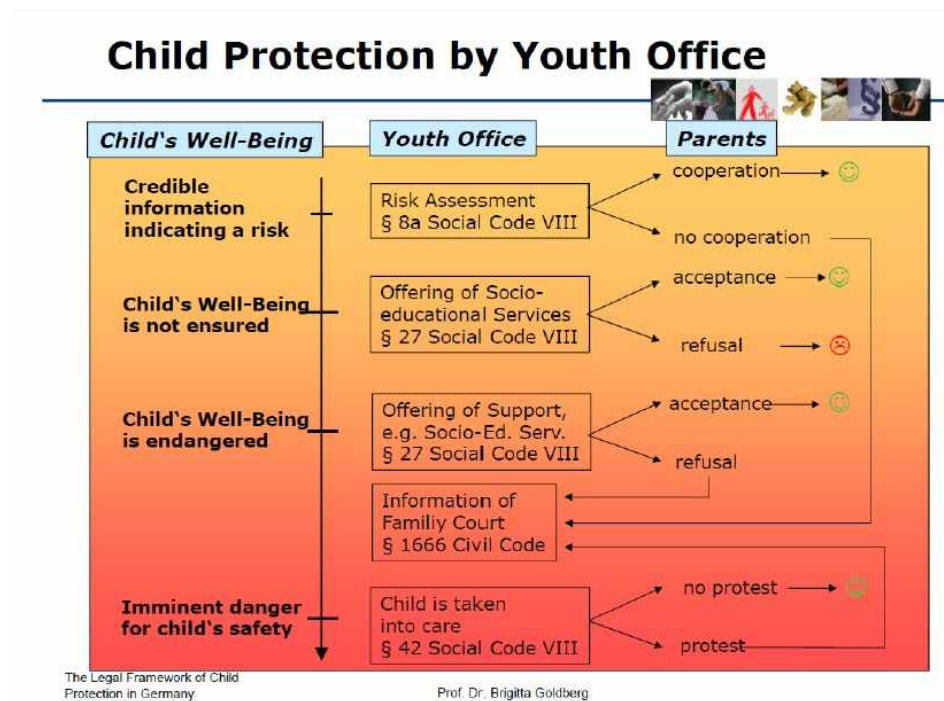
- 아동·청소년·가족(User, Citizens)
- 지방자치단체(Towns and Counties): 위기도 조사 및 사례관리 진행, 아동·청소년·가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.
- 민간기관(NGOs & Private companies): 어린이집, 상담센터, 청소년센터 등 지자체에서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에서 제공함.
- 가정법원(Family Court): 부모 또는 가족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경우, 법원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함.



〈서비스 주체의 역할 관계도〉

○ 위기도에 따른 아동보호전달체계

- 아동의 위기도(Well-Being)에 따라 사례관리가 진행되며,
- 부모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거나 부모교육 등의 서비스 참여에 동의할 경우,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.
- 하지만, 부모가 협조하지 않거나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, 가정법원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.



〈위기도에 따른 아동보호체계〉

□ 일시: 2018.10.23.(화) 10:00-12:30

□ 장소: Stadt Hagen Fachbereich Jugend Und Soziales

□ 참석자: [원내] 류정희 연구위원

[원외] Stadt Hagen Reinhard Goldbach, Sabrina Dahl, Uwe Leicht, Natalia Keller, 김진석 교수(서울여대), 김이진 전문위원 (사보위), 이아영(통역)

□ 회의내용

○ 하겐시의 통합적 지원 서비스 구조

- 하겐시의 청소년 사회국은 총 8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으며, 크게 아동과 청소년으로 나눌 수 있음. 노인과 관련된 업무도 함께 진행되고 있음.

- 이는 하겐시만의 업무 특성이며, 다른 도시에서는 청소년국과 사회국이 분리되어 있음
- 아동, 청소년 복지와 더불어 약물 중독, 사회통합센터(이민자가정), 정신보건, 경제적 지원 등 복합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음.



〈하겐시 청소년 사회국의 조직구조〉

○ 독일의 아동·청소년 관련법

- 사회법전 8권 아동청소년복지(SGB VIII Kinder- und Jugendhilfe)
- 사회법전 12권 사회서비스(SGB XII Sozialhilfe)
- UN 아동권리협약
- 연방아동보호법(Bundeskinderschutzgesetz:BKiSchG)
 - *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를 만족시키고 그들의 신체적, 정신적, 심리적인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2012년에 제정됨(1조1항).
-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(헌법) 6조2항

○ 공공-민간의 네트워크(network) 구축

- 청소년사회국 업무의 핵심은 예방(prevention)에 있으며, 이를 위해 지역 기반의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함. 부모교육, 아동보호, 청소년 보호 등 목적에 따라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도 함.
- 하겐시의 경우, 신생아 방문사업, 출산도우미, 가정교육사 등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.
- 또한, 유치원과 유치원 종사자들이 가족센터(Familienzentren)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네트워크를 구축하

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.

- 독일은 민간 기관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으며, 하겐 시에서도 네트워크 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.

○ 아동보호체계

-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생시, 청소년사회국 담당 사회복지사 2명이 현장조사를 진행하며, 경찰 동행은 상황이 심한 경우에만 이루어짐.

- 부모와의 초기상담을 통해 부모교육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며, 부모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아동을 분리시킬 수 있음. 이때, 아동의 분리는 가정법원의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짐.

- 분리된 아동에 대해 6세 미만은 가정과 비슷한 환경을 가진 위탁가정으로, 6세 이상은 그룹홈 개념의 거주시설로 보내지며, 가까운 시설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함.

- 부모의 준비교육을 통한 원가정보호(원가정복귀)가 원칙이며,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아동은 거주시설에서 독립할 때까지 거주할 수 있음.

- 부모가 아동을 포기하기 이전에는 입양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며, 실제 입양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.

2. 스웨덴

□ 일시: 2018.10.25.(목) 10:00-12:00

□ 장소: Stockholm Stad

□ 참석자: [원내] 류정희 연구위원

[원외] Magnus Waller, Erik Nordstrand, Annelie Sjöberg (Stockholm Stad), 김진석 교수(서울여대), 김이진 전문위원(사보위), Therese Angenberg Norin(통역)

○ 스톡홀름시(Stockholm Kommun)의 아동보호체계

- 시(Kommun)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제공할 서비스에 대해 정할 수 있으며, 14개의 지역구(City Council District)에서는 어린이집, 장애, 노인, 사회서비스 등과 같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.
-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와 더불어 예방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.
- 청소년지원센터(Ungdomsmottagning): 아동·청소년(23세미만, 시마다 기준 상이)이 심리 상담, 의료, 부모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, 다른 가족 구성원도 지원이 가능함.
- 아동에 대한 기준(나이)은 보통 0~12세, 12~18세(또는 20세)로 나누어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나, 이는 도시 또는 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

○ 신고된 아동의 위기도 조사 체계

- 아동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신고의무제(Mandatory Report System)이 있으며, 주변 지인(친척, 친구, 이웃)도 신고 가능함. 또는 15세 이상의 아동이 직접 신고할 수 있음.
- 지난해 스톡홀름 내 아동청소년 185,000명 중 26,000건의 사례가 접수되었으며, 이 중 50%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음.
- 신고 접수 후에는 최대 4개월 간 아동의 건강, 교육, 심리, 사회적 관계, 부모의 능력, 경제적 상황 등에 대한 위기도 조사가 이루어짐.
- 위기도 조사 시, 부모의 동의하에 학교, 경찰, 친척, 사회복지사 등 조사면담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.

○ 사후관리체계

- 위기도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분리가 필요한 아동은 위탁가정(일시)으로, 이외에는 가정 내에서 보호가 되면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.
- 가정위탁(일시)은 1일 ~ 4개월까지 가능하며, 위탁 부모에게는 일정 금액의 급여, 아동을 위한 옷, 음식, 교육 등이 지원됨. 위탁가정에

대한 보수교육, 모니터링은 시에서 담당하고 있음.

- 부모가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, 만약 이를 거절할 때에는 법원(Court)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함.
- 향후 3년 동안 6개월마다 사후관리를 진행하며, 이 기간 동안 부모가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친권 박탈이 가능함.
- 이 때 가정위탁은 친척이 1순위이며,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일시 가정위탁 부모에게 친권이 이전됨(입양과는 다른 법체계 내에서 이루어짐).

□ 일시: 2018.10.25.(목) 13:00-15:00

□ 장소: Swedish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ies And Regions (지방정부연합)

□ 참석자: [원내] 류정희 연구위원

[원외] Fredrik Hjulström, Pani Hormatipour(SLK), 김진석 교수(서울여대), 김이진 전문위원(사보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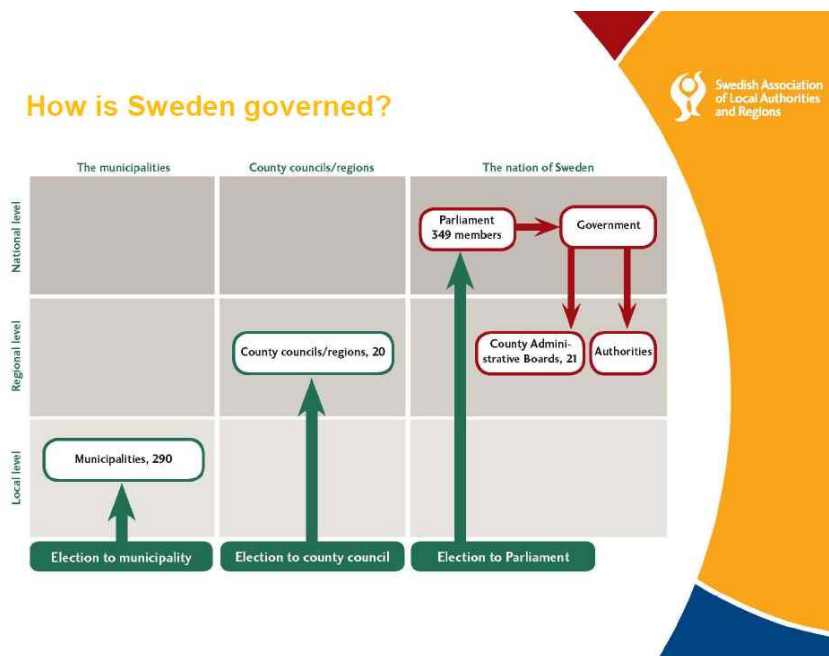
○ SALAR 소개

- 스웨덴 지방자치단체협회(SALAR)는 스웨덴의 지방정부를 대표하고 지지하는 단체이며,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음.
- 협회의 주역할은 지방정부의 이익을 대변하여 중앙정부, 스웨덴 의회, 정부기관, 기타 기관들과 협의하는 역할을 함. 또한, 지방정부의 운영 개발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며, 소속 기관들의 협의를 위해 장소를 제공하기도 함.
- 협회의 운영은 회원들(지방정부)이 자발적으로 매년 지불하는 보수(세금기반)로 충당되고 있음.

○ 지방자치단체의 역할

- 20개의 주(Län)와 290개의 지자체(Kommun)가 있으며, 각각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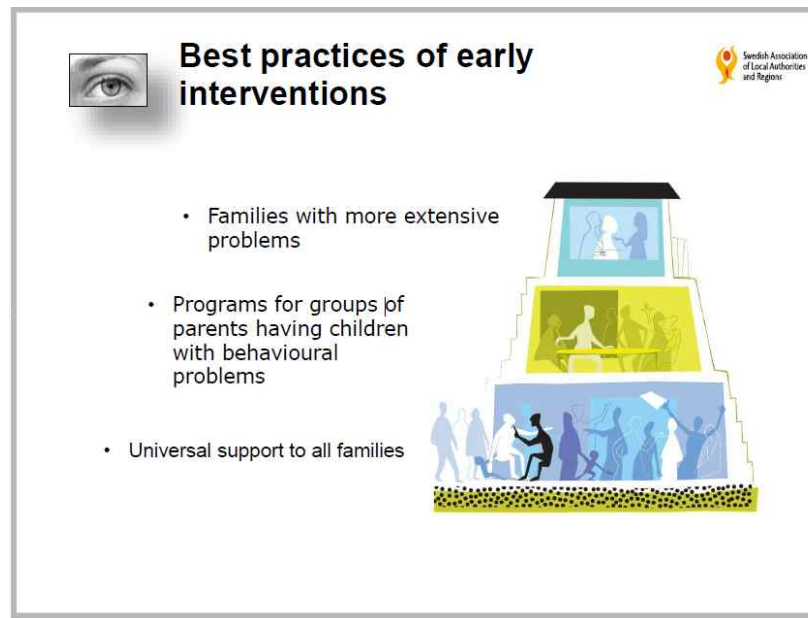
- Län : 건강관리, 지역사회 발전과 같은 지역 전반의 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음.
- Kommun : 학교, 어린이집, 노인, 장애인 돌봄 시설 등 지역사회 내에서 대부분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.
- 지방자치단체는 GDP의 20%를, 공공부문의 70%의 소비를 차지하고 있으며, 공무원 인력은 전체 노동 인구의 25%임.



〈스웨덴 행정체계〉

○ 스웨덴의 가족정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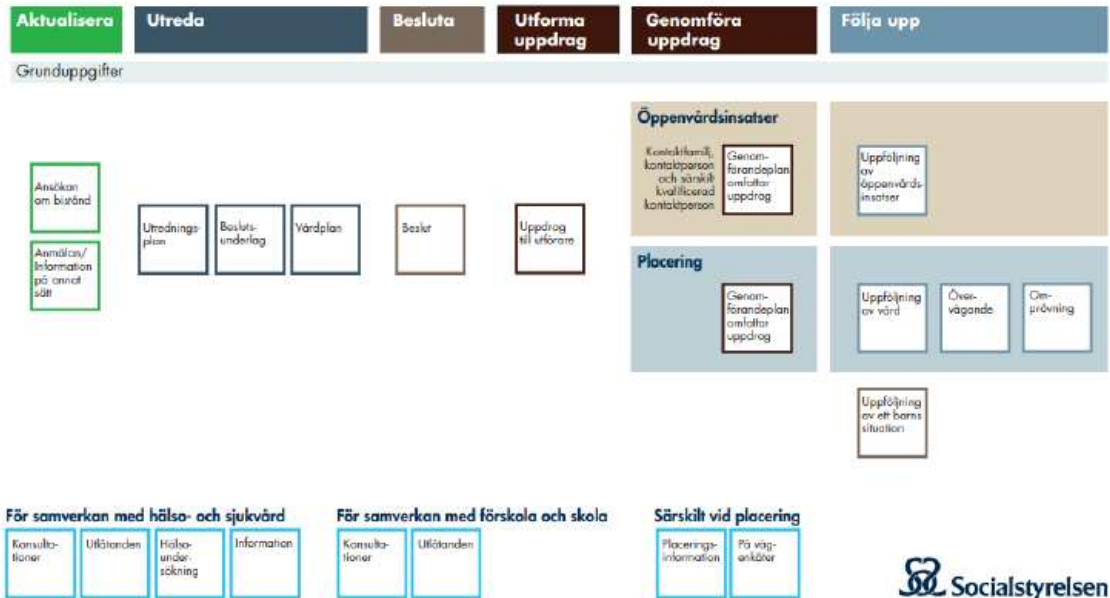
- 모든 가정을 위한 정책부터 가벼운 행동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는 가정,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가정으로 구분되어 각각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됨.
-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초기에 발견하는 것은 치료기간과 비용을 절감시키고 더 나은 치료 결과를 도출함.
- 따라서, 촘촘한 사례관리와 서비스 연계를 통한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.



〈조기개입을 통한 가족문제 해결〉

○ 위기도 조사 및 사후관리

- 조사: 위기도 조사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에서 배포하며, 위험과 보호요소, 사회네트워크 등 모든 영역에 대해 조사함.
- 계획: 장단기적으로 아동·가족에게 필요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움.
- 문제가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대 부모에 대한 처벌 보다는 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.



<스웨덴 사례 관리 진 행 도>

□ 일시: 2018.10.25.(목) 16:00-18:00

□ 장소: Lidingö Stad

□ 참석자: [원내] 류정희 연구위원, 노대명 연구위원

[원외] Young Hee Youn(Lidingö Stad), 김이진 전문위원(사보위)

○ 아동·청소년담당 사회복지공무원 체계

- 사회복지담당공무원(Social worker): Lidingö의 경우 인구 4만7천 여명을 아동·청소년 사회복지사 15명이 담당(조사)하고 있음. 대략 사회복지사 1명당 20~30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음.
- 사회복지공무원은 아동·청소년·가족, 노인, 장애인 등의 각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, 해당 분야의 조사부터 종결까지 담당하고 있음. 또한,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사, 전문가 등이 Kommun

의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있음.

- 원할 경우 본인의 관심 분야에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으며 (순환보직의 제한이 없음), 전문성을 위한 교육(대학원, 외부강사 초청 등)도 제공받을 수 있음.

○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서비스 제공

- 개인이 원할 경우 비용을 지불하여 민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, 대부분의 사회서비스는 공공에서 제공되며,
- 공공서비스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외부와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됨. 이 때의 비용은 Kommun 또는 Ländsting에서 지불하며, 개인부담은 없음.

○ 아동·가족의 사례관리 및 대안양육체계, 사후관리

- 아동·가족의 사례조사를 담당한 사회복지사는 아동이 위탁가정 등으로 보내질 경우에도 사후관리를 진행함.
- 가족 내 복합문제에 대해서는 타 부서와의 사례회의 가능(개인정보 활용 동의 필요)
- 대안양육체계(위탁가정, 그룹홈 등): 사례조사 사회복지사와는 별도로 위탁가정을 선별 및 심사하고 연결시키는 부서가 있으며, 이후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음.

□ 일시: 2018.10.27.(토) 15:00-17:00

□ 장소: Stockholm

□ 참석자: [원내] 류정희 연구위원

[원외] 김진석 교수(서울여대 교수, 現 안식년 체류중,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), 김이진 전문위원(사보위)

○ 스웨덴과 독일의 인터뷰 결과 정리와 논의